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73호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, 제7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에 따라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12월 20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

우편대체에 관한 사항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69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계좌대월 금리)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 계좌대월 : $CD(91일)수익률 + 2.8\%p - 우대금리$
2. 퇴직급여 계좌대월
 - 가. 공무원재직자·별정우체국직원 : $CD(91일)수익률 + 2.2\%p - 우대금리$
 - 나. 단기재직공무원 : $CD(91일)수익률 + 2.8\%p - 우대금리$
3. 예금담보 계좌대월 : 담보예금 금리 + 1.2%p (단, 여러 건(최대 5계좌)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,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)

4. 연체금리

가.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: 대월 종류별 금리 + 6.0%p

나. 예금담보 계좌대월 : 없음

5. 제1호 및 제2호의 ‘우대금리’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, 최대 한도를 0.55%p로 한다.

가.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: 0.2%p

나.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: 0.1%p

다.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: 0.15%p

라. 우체국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·폰뱅킹 가입자 : 0.1%p

마. 전자통장 발급자 : 0.1%p

바. 제휴카드(체크 또는 신용) 발급자 : 0.1%p

사.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: 0.1%p

아.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: 0.1%p

자. 사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: 0.1%p

차.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: 0.1%p

카. 우체국체크카드 발급자 : 0.1%p

부칙 <개정 2011. 12. 20>

이 고시는 2011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우체국예금 고시 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)

개 정 전	개 정 후
제8조(계좌대월 금리)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일반 계좌대월 : CD(91일)수익률+2.8%p-우대금리 2.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. 공무원재직자·별정우체국직원 : CD(91일)수익률 + 2.2%p - 우대금리 나. 단기제직공무원 : CD(91일)수익률+2.8%p-우대금리 3. 예금담보 계좌대월 : 담보예금 금리 + 1.2%p (단, 여러건(최대 5계좌)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,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) 4. 연체금리 가.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: 대월종류별 금리+ 6.0%p 나. 예금담보 계좌대월 : 없음 5. 제1호 및 제2호의 ‘우대금리’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, 최대 한도를 0.55%p로 한다. 가.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: 0.2%p 나.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: 0.1%p 다.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: 0.15%p 라. 우체국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·폰뱅킹 가입자: 0.1%p 마. 전자통장 발급자 : 0.1%p 바. 제휴카드 발급자 : 0.1%p 사.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: 0.1%p 아.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: 0.1%p 자. 사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: 0.1%p 차.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: 0.1%p	제8조(계좌대월 금리)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일반 계좌대월 : CD(91일)수익률+2.8%p-우대금리 2.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. 공무원재직자·별정우체국직원 : CD(91일)수익률 + 2.2%p - 우대금리 나. 단기제직공무원 : CD(91일)수익률+2.8%p-우대금리 3. 예금담보 계좌대월 : 담보예금 금리 + 1.2%p (단, 여러건(최대 5계좌)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,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) 4. 연체금리 가.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: 대월종류별 금리+ 6.0%p 나. 예금담보 계좌대월 : 없음 5. 제1호 및 제2호의 ‘우대금리’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, 최대 한도를 0.55%p로 한다. 가.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: 0.2%p 나.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: 0.1%p 다.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: 0.15%p 라. 우체국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·폰뱅킹 가입자: 0.1%p 마. 전자통장 발급자 : 0.1%p 바. 제휴카드(체크 또는 신용) 발급자 : 0.1%p 사.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: 0.1%p 아.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: 0.1%p 자. 사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: 0.1%p 차.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: 0.1%p 카. 우체국체크카드 발급자 : 0.1%p